

##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

의 안 번 호	63
--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01. 6. 28  
발 의 자 : 문현근 의원 외4

### 1. 주문

- 우리군의회 농림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.
  - 당초 : 2001. 2. 6 ~ 2001. 7. 5 (5개월)
  - 변경 : 2001. 2. 6 ~ 2001. 11. 9 (9개월)

### 2. 제안이유

-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2001. 2. 6 ~ 2001. 7. 5일까지 5개월간이었으나,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보다 세부적인 서류심사와 내실있는 현장조사 활동을 위해서 본 특위 활동기간을 주문과 같이 연장코자 함.

2001. 7. 3

## 농림사업실태조사 중간보고

농림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

## 농림특위활동 중간보고

### i. 목적

-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농림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태등을 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예산심의에 참고도록 하기 위한 농림사업 특별조사활동 실시.
- 그동안 평통위원의 통일연수 및 정치일정, 농번기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충분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지 못하여 보다 깊이있는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중간보고 드림.

### ii. 설치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
-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, 제3조

### iii. 조사대상

- '98. 1. 1 ~ 2000. 12. 31 기간중 추진한 사업비 1,000만원 이상의 농림사업

### iv. 조사경과

1. 특위구성 :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문현근, 간사 박윤수, 위원 조영길, 남은기, 김성인, 문정조, 정해봉 의원으로 구성함.
2. 서류검토 : 제1차-제5차에 거쳐 농림사업에 대한 서류조사를 실시함.
3. 추가자료요구 : 6차에 거쳐 총 121건의 추가자료를 요구함.
4. 현지조사 대상사업선정 : 제5차 회의에서 13개읍면 4개실과 소관 55개 사업이 현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.
5. 현지조사 : 4차에 거쳐 6개지역 (춘양, 능주, 남면, 도곡, 동면, 이서) 25개 사업을 실사함.
6. 향후일정 :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사업에 대한 실사, 추가로 요구된 자료의 검토, 문제점 분석 및 대안검토, 보고서 작성 등이 예정됨.

#### v. 활동성과

- 지난 5개월간의 특위활동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 철저(남면 절산), 남면 남계지구의 임도개설공사의 진입로가 급경사, 급커브로 위험하여 시정토록 하였고, 경지정리지역내의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동면 대포지구 및 마산지구 경지정리지역에 대해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농경지 진입로 등을 개선토록 하였으며, 한해내책으로 생활용수 및 관정등의 설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춘양·능주·남면·도곡·동면·이서 지역의 사업에 대하여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음.
- 향후 화순읍등 기타 면지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공사의 부실예방, 예산의 적정투입, 사업의 효과성 검토 등 내실있는 농림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사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#### vi. 농림특위 연기사유 및 견의

- 본 농림특위의 활동기간이 2001. 2. 5 ~ 7. 5일까지 5개월간이었으나 보다 세부적인 서류심사와 내실있는 현지조사 활동을 위해 그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요구됨.
- 제반여건 등을 고려할 때, 4개월 정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.